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장소
의 원 의 전 운 전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8급상당)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중구의회

2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직무내용 및 임용예정지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임용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의원의전운	시간선택 임기제 라 급 (8급상당)	1명	2년 (주 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별 일정 관리 · 일반 의원 행사 의전 · 의원 등록 및 기록관리 · 지역구별 동향파악 및 보고 · 상임위원회 차량 지원 · 행정차량(승합,버스) 운영 ※ 1종 대형면허 소지 필수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재약정하여 연장 가능

4 시험방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적격여부 서면심사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2차 시험(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관련 전문지식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등 처리방법
 - 평정점수가 동점인 경우 면접심사위원의 전원합의로 순위 결정(별도 평정표 없음)
 - 예비합격자 : 면접시 각 분야별 차순위 1명 내외 예비후보자 결정

-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 전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점수 차순위 자(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 시험위원별 채점 평정의 평균이 “40점” 미만인 경우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응시자격

1.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의원 의전담당의 경우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우선 채용
- 연령 : 만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직 급	자격기준
라 급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회 또는 지방의회 근무경력(우대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정, 의전, 운전 근무경력

※ 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3. 보수 수준

○ 보 수 : 기본급 + 제수당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
- 구체적 금액은 하단의 급여기준액에서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급여기준	비 고
라 급 (8급 상당)	주 35시간 (09:00 ~ 17:00, 1일 7시간)	연봉 상한액 50,967천원 연봉 하한액 36,357천원	근무시간은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 수 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6 시험일정

구 분	일시 및 기간	장 소	내 용	비 고
공고	2024.8.7.(수) ~ 2024.8.18.(일)	홈페이지 공고	· 인원·자격 등 공고	
원서접수	2024.8.19.(월) ~ 2024.8.21.(수)	중구의회사무과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문접수(09:00~18:00)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8.23.(금)	홈페이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2024.8.28.(수) (예정)	중구의회 소회의실	·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면접대기장소에 입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8.30.(금) (예정)	홈페이지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	2024.9.19.(목)	중구의회사무과		

7**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4.8.19.(월) ~ 8.21.(수) 09:00 ~ 18:00

※ 방문접수만 가능(등기우편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의정팀(02-3396-8155)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39길 40, 2층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응시수수료) 구매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중구청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1층

4.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나.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라급 5,000원

⇒ 수입증지 : 서울시중구청(중구 창경궁로17)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에서 응시수수료(수입증지비) 지급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라. 자기소개서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야 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발행기관 직인, 연락처 등 기재되어야 함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재직) 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카.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타.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8 기타사항

1.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이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3.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2-3396-81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